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1. 심 사 경 위	43
2. 제안설명 요지	43
가.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	43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 규모	44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규모	45
3.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결산	46
4. 채권·채무 결산	47
5. 재산결산	48
6. 기금결산	49
7. 금고결산	51
8. 검토보고 요지	52
9. 주요지적사항	56
10. 심 사 결 과	56
11. 소수의견요지	56
12. 기타필요한 사항	56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 10. 2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1995. 11. 4

다. 상 정 일 자 : 제119회 임시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5. 11. 6)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최 경 주)

가.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세 결 산 입액 ②	세 결 산 출액 ③	세 계 잉 여 금
합 계	768,809,766	733,616,579	535,735,968	197,880,611
일 반 회 계	542,150,806	553,639,441	471,032,718	82,606,723
특 별 회 계	226,658,960	179,977,138	64,703,250	115,273,888
· 공영개발사업	148,526,389	99,677,199	13,388,142	86,289,057
· 지역개발기금	56,981,008	59,157,813	30,789,355	28,368,458
· 의료보호기금	15,786,097	15,775,083	15,569,779	205,304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474,177	3,475,754	3,474,000	1,754
· 대청호대책	1,891,289	1,891,289	1,481,974	409,315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①	징 결 정 수 액 ②	수 납 액 ③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합 계	768,809,766	754,413,275	733,616,579	238,604	20,558,092
일반회계	542,150,806	574,144,003	553,639,441	238,604	20,265,958
특별회계	226,658,960	180,269,272	179,977,138	-	292,134
· 공 기 업	205,507,397	159,127,147	158,835,013	-	292,134
-공영개발사업	148,526,389	99,969,334	99,677,200	-	292,134
-지역개발기금	56,981,008	59,157,813	59,157,813	-	-
· 의료보호기금	15,786,097	15,775,083	15,775,083	-	-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474,177	3,475,753	3,475,753	-	-
· 대청호대책	1,891,289	1,891,289	1,891,289	-	-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7,688억 976만 6천원 대비 98.1%인 7,544억 1,327만 5천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미수납액 205억 5,809만 2천원은 일반회계가 98.6%인 202억 6,595만 8천원, 특별회계가 2억 9,213만 4천원으로 1.4%임.
- 불납결손액 2억 3,860만 4천원의 내역은 일반회계가 2억 3,860만 4천원이, 특별회계는 없음.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①	지 출 원 인 액 ②	지 출 액 ③	다음년도 이월액 ④	불 용 액
합 계	768,809,766	575,611,348	535,735,968	175,451,399	57,622,399
일반회계	542,150,806	510,684,309	471,032,718	55,102,921	16,015,167
특별회계	226,658,960	64,927,039	64,703,250	120,348,478	41,607,232
· 공 기 업	205,507,397	44,401,286	44,177,497	120,348,478	40,981,422
-공영개발사업	148,526,389	13,611,931	11,388,142	120,348,478	14,789,769
-지역개발기금	56,981,008	30,789,355	30,789,355	-	26,191,653
· 의료보호기금	15,786,097	15,569,779	15,569,779	-	216,318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474,177	3,474,000	3,474,000	-	177
· 대청호대책	1,891,289	1,481,974	1,481,974	-	409,315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7,688억 976만 6천원 대비 평균 69.7%인 5,357억 3,596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86.9%,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28.5%로서 일반회계는 정상적인 결산이라 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는 부진한 편임.

·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이 9.0%만이 집행된 것은 이는 부용공업단지조성 사업과 가경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보상금 집행이 지연된데 기인한 것임.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도 54.0%가 집행되었는데 이는 구획정리 사업등이 계획변경으로 미집행되어 저조한 집행임.

3.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결산

(1)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종축장 진입로 사유지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의 38건에 551억 292만 1천원으로서

· 계속비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비 : 종축장진입로 사유지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 외 7건에 154억 5,133만 1천원임.

· 사고이월비 : 공무원 교육원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비의 31건에 396억 5,159만원임.

(2) 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부용공업단지 및 가경2지구 조성사업비등 5건에 1,203억 4,847만 9천원으로서,

· 계속비 : 2건에 1,159억 621만 8천원

· 명시이월비 : 2건에 44억 1,644만 2천원

· 사고이월비 : 1건에 2,581만 9천원임.

4. 채권·채무결산

(1) 채권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전년도말현재액	'94년 발생	'94년 소멸	당해년도말현재액
합 계	181,783,855	145,000,307	133,521,041	193,263,121
일반 회 계	10,059,872	19,355,819	15,205,891	14,209,800
특별 회 계	171,723,983	125,644,488	118,314,150	179,053,321

(2) 채무 증감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93말 잔액	'94 발생액	소 계	'94 상환	'94말 잔액
계	164,984,149	70,223,122	235,207,271	24,649,002	210,568,270
· 지방 채	151,212,723	44,493,277	199,706,000	14,822,000	180,884,000
· 차 입 금	455,660	17,370,000	17,825,660	103,930	17,721,730
· 채무부담행위	8,000,000	7,940,802	15,940,802	8,000,000	7,940,802
· 해 외 차 관	5,315,766	419,044	5,734,810	1,713,072	4,021,738

5. 재산결산

(1)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분 용도	전년도말 현재액	'94 증 감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80,035,628	37,688,437	23,217,554	94,506,511
· 행정예산	66,107,011	37,080,685	19,662,717	83,524,979
- 공공용재산	27,407,834	720,026	72	28,127,788
- 공용재산	35,232,629	36,174,883	19,640,368	54,767,144
- 기업용재산	3,466,548	185,776	22,277	3,630,047
· 보존재산	4,501	-	-	4,501
· 잡종재산	13,924,116	607,752	3,554,837	10,977,031

(2) 물품조사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정수	전년도말 보유현액	당해년도 증감실정		
			취득	처분	보유현황
수량(점)	4,856	2,567	1,373	400	3,540
가액(천원)		18,975,884	7,779,538	4,283,601	22,471,821

- 물품은 지방재정법 제9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중 현금, 유가증권,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으로서, 동법 제104조(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에 따라 1994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보고한 내용임.

6. 기 금 결 산

○ 적립기금 운영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종류	적립액			94년도 사용액	94년도말 현재액	근거
	93년까지	94년도분	계			
계	19,925,748	15,776,902	35,692,650	9,554,850	26,137,800	
체육진흥기금	138,917	13,414	152,331	152,331	0	도체육진흥기금 설치및운영조례
문화예술진흥기금	3,616,122	680,431	4,296,553	0	4,296,553	도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설치운영조례
생활보호기금	59,324	7,219	66,543	0	66,543	생보법제37조및 도운영관리조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648,391	275,089	923,480	121,463	802,017	도저소득주민자 녀장학금지급조례
재해구호기금	3,330,547	798,958	4,129,505	191,877	3,937,628	재해구호법 제15조
청소년자립기금	72,974	17,661	90,635	0	90,635	도청소년지원사 업운영관리조례
청소년장학기금	19,576	4,107	23,683	2,400	21,283	도청소년지원사 업운영관리조례
중소기업 운전자금	2,330,182	316,868	2,647,050	0	2,747,050	도중소기업운전 자금조례
자동차 운수사업 발전기금	3,042,538	340,117	3,382,655	276,000	3,106,655	도자동차운수사 업법제31조의2 규정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0	11,595,787	11,595,787	5,981,000	5,614,787	도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조례
도로보수 중기운영 기금	495,226	0	495,226	495,226	0	도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조례
식품진흥 기금	1,475,336	1,400,794	2,876,130	84,553	2,791,577	식품위생법
중소기업 구조개선 기금	4,616,483	286,303	4,902,786	2,250,000	2,652,786	도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및운영 조례

(단위 : 천원)

구분 종류	적립액			94년도 사용액	94년도말 현재액	근거
	93년까지	94년도분	계			
(증평 출장소)	(80,132)	(30,154)	(110,286)	0	(110,286)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69,836	29,052	98,888	0	98,888	본청분과 동일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10,296	1,102	11,398	0	11,398	본청분과 동일

○ 상기 적립금은 적법하게 적립되었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잔액증명과 상이없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음.

다만, 체육진흥기금은 관련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전액 체육회에 체육관 건립기금으로 이관하였고,

도로보수중기운영 기금 역시 관련 조례의 폐지로 전액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되었음.

7. 금고 결산

○ 잉여금처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세계잉여금	잉여금처분		
				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733,616,579	535,735,968	197,880,611	175,451,400	64,517	22,364,694
일반회계	553,639,441	471,032,718	82,606,723	55,102,922	64,517	27,439,284
특별회계	소계	179,997,138	64,703,250	115,273,888	120,348,478	△5,074,590
	의료보호기금	15,775,083	15,569,779	205,304		205,304
	농어촌개발	3,475,754	3,474,000	1,754		1,754
	대청호대책	1,891,289	1,481,974	409,315		409,315
	공영개발	99,677,199	13,388,142	86,289,057	120,348,477	△34,059,420
	지역개발기금	59,157,813	30,789,355	28,368,458		28,368,457

○ 일반회계

- 총 수입액이 5,538억 2,685만원이었으나 과오납금 1억 8,740만 9천원을 반환하고 실수납액은 5,536억 3,944만 1천원이었고,
- 총 지출액은 4,746억 3,052만 7천원이었으나 지출금액중 35억 9,780만 9천원을 반납받음으로써 실지급액은 4,710억 3,271만 8천원으로 826억 672만 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

- 공영개발사업의 4건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1,799억 7,713만 8천원이었고 총세출예산액은 647억 325만원으로 1,152억 7,388만 8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8. 검토보고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우 병 수)

세 입 부 분

< 일반회계 >

1. 지방세 예산과소 추계

지방세 목표액이 1,164억 9,600만원 대비 1,381억 3,551만 7천원을 수납하여 216억 3,951만 7천원을 초과징수한 것은 세수증대 노력때문이기도 하나,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과소책정한 결과라고 볼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2. 미수납 징수대책 강구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살펴보면 예산액보다 467억 9,244만 4천원이 초과징수 되었고, 그 내역은 지방세 400억 5,550만 6천원, 세외수입 67억 3,693만 8천원으로 이는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볼수 있으나, 징수결정액 중에는 주소불명, 채무자 능력부족, 납세자 태만등으로 인하여 미수금이 지방세에서 181억 7,821만 3천원, 세외수입에서 20억 8,774만 5천원으로 총 202억 6,595만 8천원에 달하는바, 미수액 중에는 취득세가 29억 1,261만 1천원, 과년도 수입이 146억 519억 8천원으로 이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이 요구됨.

3. 예산편성의 부적정

세입금액의 증가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초과징수액 216억 3,591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많은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로 앞으로는 세입이 발생하는 모든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부담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징수지연

각종공사 시행에 따른 부담금은 사업시행년도에 징수 사용하여야 하나 남한강 대교

가설 공사비 9억 3,1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은 시행완료후 즉시 시군에서 도에 납부 하여야 함에도 1,200만원이 징수가 지연된 것은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사항임.

세 출 부 분

< 일반회계 >

1. 불용액 과다 발생

'94년도 예산액 5,421억 5,080만 6천원중 집행액은 4,710억 3,271만 8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액의 2.9%인 160억 1,516만 7천원이 발생하여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므로 세출예산은 소요액을 적정하게 판단하여 편성 운영하고 예산 성립후 여건변동, 계획변경, 취소등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재원부족으로 해결치 못한 주민 숙원사업비등에 투자하는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2. 설계소홀로 인한 계약변경 과다

모든 시설공사의 설계는 당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벽하게 하므로 공사 시행도중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총공사 62건중 75%에 해당하는 52건의 설계변경을 하여 37억 8,600만원을 초과 집행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

3. 세출예산 과다 전용

예산전용은 '92년도에 4건, '93년도에 17건, '94년도에도 15건으로 예산전용은 최소한의 금액을 증감조정하여 세출예산을 신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인데, '94년도 세출예산의 전용은 '93년도에 비하여 건수로는 2건이 감소되었으나 금액으로는 2.8배가 증가한 8억 4,300만원이 전용되었으므로, 이를 확대 운용할시는 세출예산 전용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예산제도를 근본적으로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화 해야 할 것임.

4. 사고이월 운영의 부적정

시설공사는 사전에 기본설계를 정확히하여 소요금액, 공사기간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는데 청주~미원간 도로 확포장 2차공사의 29건은 년도내에 준공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는데에도 명시이월 처리하지 않고 계약만 체결한 후 착수만 하여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사고이월 시킨 취지는 이해하나 년도말에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체결을 억제하고 명시이월 조치하여 익년도에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기금관리 불합리

각종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별로 높은 소득을 얻고자 고율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바,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예탁함에 있어 기관의장 또는 회계직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는 시정하여 기관의장 또는 행당기금의 회계직의 명의로 변경되어야 할 사항임.

6. 재산관리 불합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3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에 대하여는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도로관리사업소의 로울러 중기등 77점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물품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할 사항임.

< 특별회계 >

1. 순세계잉여금 처분의 부적정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출연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토록 하여야 함에도 과거 3년간 평균 3.4%만을 출연하므로써,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례상의 출연비율을 하향 조정하는등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택지 분양 부진

청주 가경 2지구에 대한 택지를 개발하고 '92년부터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94년도말 까지 19필지 3,177평이 분양되지 않고 있으므로 미분양 택지에 대하여 특별분양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특별조치하여야 할 것임.

3.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은 공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영개발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이바지 하여야 할 것임.

9. 주요지적사항

◦ 없음

10.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 첨 부 :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부.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승인(안) 1부.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안) 1부.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세 결 산 액 ②	세 결 산 출 액 ③	세 계 잉 여 금
합 계	768,809,766	733,616,579	535,735,968	197,880,611
일 반 회 계	542,150,806	553,639,441	471,032,718	82,606,723
특 별 회 계	226,658,960	179,977,138	64,703,250	115,273,888
· 공영개발사업	148,526,389	99,677,199	13,388,142	86,289,057
· 지역개발기금	56,981,008	59,157,813	30,789,355	28,368,458
· 의료보호기금	15,786,097	15,775,083	15,569,779	205,304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474,177	3,475,754	3,474,000	1,754
· 대청호대책	1,891,289	1,891,289	1,481,974	409,315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승인(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①	징 결 정 수 액 ②	수 납 액 ③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합 계	768,809,766	754,413,275	733,616,579	238,604	20,558,092
일반회계	542,150,806	574,144,003	553,639,441	238,604	20,265,958
특별회계	226,658,960	180,269,272	179,977,138	-	292,134
· 공 기 업	205,507,397	159,127,147	158,835,013	-	292,134
-공영개발사업	148,526,389	99,969,334	99,677,200	-	292,134
-지역개발기금	56,981,008	59,157,813	59,157,813	-	-
· 의료보호기금	15,786,097	15,775,083	15,775,083	-	-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474,177	3,475,753	3,475,753	-	-
· 대청호대책	1,891,289	1,891,289	1,891,289	-	-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①	지 출 원 인 액 ②	지 출 액 ③	다음년도 이월액 ④	불 용 액
합 계	768,809,766	575,611,348	535,735,968	175,451,399	57,622,399
일반회계	542,150,806	510,684,309	471,032,718	55,102,921	16,015,167
특별회계	226,658,960	64,927,039	64,703,250	120,348,478	41,607,232
· 공 기 업	205,507,397	44,401,286	44,177,497	120,348,478	40,981,422
-공영개발사업	148,526,389	13,611,931	11,388,142	120,348,478	14,789,769
-지역개발기금	56,981,008	30,789,355	30,789,355	-	26,191,653
· 의료보호기금	15,786,097	15,569,779	15,569,779	-	216,318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474,177	3,474,000	3,474,000	-	177
· 대청호대책	1,891,289	1,481,974	1,481,974	-	409,315